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
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66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2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30일

-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)」 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(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)하는 경우¹⁾
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9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임대(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)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 조치 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활복지 향상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.
- 상위법령의 조문에 부합되게 규정하였기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11. 21.~'23. 11. 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4. 검토의견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 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80%이내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²⁾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규정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,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「친환경자동차법」(법률 제18323호, 2021. 7. 27., 시행 2022. 1. 28.) 개정으로 국·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"100분의 50"에서 "100분의 80"으로 확대되었음

2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-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, 차량가격 인하 및 각종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충전시설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음.³⁾
- 또한,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3) 이범규(대전세종연구원), 「친환경자동차(전기차, 수소차)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방안」,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(정책연구 2018-28), 2018, 3쪽.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) 도지사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(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9조의2(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) 도지사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(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.</p>

관계 법령

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】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개정 2021. 7. 27.>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